#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09. 4. 22. 건설문화위원회

# 1. 심사 경과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4월 8일
  - 회부일자 : 2009년 4월 9일
- □ 상정일자 :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9. 4.20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발전국장 박 범 수)

## □ 제안 이유

- 도시계획조례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폐지하여 토 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

례에서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삭제(안 제6조, 제7조)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위원 임명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문화전문위원 윤 영 해)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도시계획조례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관련조 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11개시도 조례개정완료, 3개(경기, 광주, 전남)시도 추진중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시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을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충청북도도 시계획위원회"를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정책관리실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 제18조의 제목 "회의의 비공개 등"을 "회의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회의 및 회의록은"을 "회의는"으로 한다.
-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한 사항 등은 시·군조례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혂 개 정 안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 도지사는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 도제한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1.(현행과 같음) 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2.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2.(현행과 같음) 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특 3.<삭 제> 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법 제 제7조(용도지구의 지정) <삭 제> 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 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 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구 3.농·수산업지구 : 농 어 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 어 축산업활동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시계(市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혀 개 정 안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법 제113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 제113조제1항 각호의 -----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 -----영제 111조에 도도시계획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 명하는 공무원은 행정부지사,정책관리 실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 제9조 (기능) <삭 제> 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 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u>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제10조(구성) <삭 제></u>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 며,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국장 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다.

 현 행	개 정 안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 또는 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12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⑤ (생 략)	②<삭 제>
제18조 ( <u>회의의 비공개 등</u> ) 위원회의 <u>회의</u>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 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 <u>설</u> )	제19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 관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사항의 심의
  -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

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 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 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심의·자문에서 제척(제척)된다.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114조 (운영세칙)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 2. 당해 시·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과련분야에 과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제5항제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②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③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 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